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공사현장 장마철 피해 예방 특정감사 -

2020. 8.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경상북도 *****소	국도00호선 00 000 위험도로개량공사 세륜세차시설 설치 부적정	시정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연번	제 목	관 련 자			문 책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국도00호선 00 0000 위험도로개량 공사 세륜세차시설 설치 부적정					

3. 처분요구일람표

- 1) 국도00호선 00 0000 위험도로개량공사 세륜세차 (시정) 2
시설 설치 부적정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경 상 북 도 *****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도00호선 00 0000 위험도로 개량공사 세륜세차시설 설치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소

관 계 부 서 0000과

내 용

경상북도*****소 0000과에서는 2018.12.26. (주)○○○○○ ○○○과 공사계약 (1,690백만원)을 맺고 2018.12.26. 착공하여 2020.8.2. 준공예정으로 국도00호선 00 0000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 사 및 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국도00호선 00 00 00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개설 L=0.66km	2018.12.26. ~ 2020.8.2.	2,250	1,690	560	(주)○○○○○ ○○○	
“ 통합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1식	2020.05.27.~ 2021.1.26.	158	158		■■■■■ ■■■■■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륜세차시설은 구조물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드나드는 트럭 등의 장비가 인접한 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의 몸체와 바퀴를 물로 씻어 내는 장치로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최대한 저감하기 위한 장비로, 설계도의 제규격

및 치수에 적합하고 수조내부는 방수처리 되어야 하면 전원 케이블과 보충수 배관은 기초공사시 매설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목공사일반시방서 생활환경관리(1-3)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륜세차시설은 공사현장 차량이 진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차량의 바퀴에 묻은 흙을 씻어 낼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하여 시공 및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소 0000과에서는 아래 [사진1]과 같이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과 무관한 장소에 세륜세차기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 공사용 차량 등이 세륜세차기를 이용하지 않고 진출입하게 되는 등 공사현장 환경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사진1]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소장은

- ① 세륜세차시설 기능이 정상화 되도록 위치 이동 또는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를 변경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공사현장 환경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